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수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원 안 : 1994년 5월 12일
- 수정안 : 1994년 6월 18일

나. 회부일자

- 원 안 : 1994년 5월 16일
- 수정안 : 1994년 6월 18일

3. 수정제안 이유

- 도의회에 제출된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된 협의조정 기능이 주어져 있어,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제통상 관련사항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 전면적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4. 주요 수정골자

- 당초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조례명을 “국제화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의·조정·의결권을 부여함.
- 국제교류협력에 국한된 위원회 기능을 농업, 특화사업등의 국제화 시책개발, UR, GR등 국제통상대책추진, 지방과학기술 진흥 방안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보강함.
- 기 제출된 “조례(안)”의 소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관 또는 단체등의 실무관계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음.
- 위원회의 기능 수행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뿐만아니라 국제통상 및 교류협력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음.

5. 검토의견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수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충청북도 직제개편으로 인해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되었고 '94년 5월 12일자로 제출된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만 국한된 협의조정 기능만이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위원회로 조례명을 변경함과 아울러 국제통상 관련사항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것으로

국제화 촉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킴
과 지방행정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각 분야의 참여속에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국제화 추진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따른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있어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 농업·특화
사업등의 국제화 시책 개발, UR·GR등 국제통상대책 추진, 지역
주재 외국 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등과 국제화에 관련한 필요 인정사
항등을 심의조정 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성위원수에 있어서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에
있어서는 1년을 단위로 위촉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심의조정 사항의 처리,

공청회개최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본제정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의 총체적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칙 부

충청북도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